

의안 번호	383
----------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0. 1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383호

다. 제출일자 : 2021. 10. 05.

라. 회부일자 : 2021. 10. 08.

2. 제안이유

-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으로부터 수탁운영 반납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성북구 솔샘로5길 92
- 규 모 : 대지 1,053㎡/ 연면적 1,599㎡(지하2층, 지상3층)

층 별	면적(㎡)	용 도	비고
합 계	1,599.91		
지하2층	272.48	온터어린이집, 기계실	*어린이 집 위탁 별도 (여성가 숙과)
지하1층	344.58	온터어린이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컴퓨터실	
지상1층	451.31	주민사랑방, 이어쉽, 강당, 자원봉사자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영양관리실	
지상2층	279.36	관장실, 운영지원사무실, 하늬바람실, 꿈바람실, 솔바람실, 건강관리실, 여자화장실, 세탁실, 조리실	
지상3층	252.18	통합사무실, 꿈이룸실	
옥탑	47.52	옥상	연면적 제외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다. 위탁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마. 소요예산 : 1,013,977천원(2021년 기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 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5년간(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수탁하여 운영하던 중, 2021년 9월 24일 수탁운영 반납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것임.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소재지	시설현황(m ²)	연간사업비 (2021년 기준)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 조직
성북구 솔샘로5길 92(정릉3동)	전용공간 1,599m² (지하2/지상3)	총 1,013,977천원 - 인건비 : 899,879천원 - 운영비 : 97,850천원 (사 85.5%, 구 14.54%) - 기 타 : 16,230천원 (사: 95%, 구: 5%)	2019.01.01. ~ 2023.12.3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관장 포함 60명

-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임.

□ 검토의견

- 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5년간 위탁할 수 있으며,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은 기존 수탁체와의 위·수탁기간 만료 전 수탁자가 변경되는 만큼 수탁체 선정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